



국제기구 · 수출신용기관

◆ 미수은,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에 15년 장기여신 제공

미수은은 최근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상환기간 최장 15년의 여신 제공을 개시하였다. 이러한 여신조건의 변경은 최근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에 따라 새로운 '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프로젝트에 관한 부문별 양해각서'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, 이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상환기간 최장 15년의 여신제공을 허용하고 있다.

미수은의 재생에너지 관련 수출지원 대상 사업은 풍력, 태양에너지, 地熱, 海低地熱, 조력,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이며, 수자원 관련 사업은 상·하수도 사업이다.

미국의 재생에너지 및 수자원 관련 수출업계는 그 동안 이 부문이 기존의 수출신용협약 조건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수출신용협약에서 정의하는 '상업성'¹⁾이 없어, 다른 OECD회원국들이 타이드윈조 프로그램을

자국 수출지원을 위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수출경쟁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. 이러한 자국 수출업계의 민원에 따라 미국은 OECD수출신용협약 회원국들에게 본 양해각서의 입안을 제안, 이번에 채택된 것으로 회원국들은 우선 향후 2년간 본 양해각서를 시험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.

해당 분야에 대한 여신의 상환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들 프로젝트의 '상업성'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상업성검토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,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타이드윈조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 미수은은 본 양해각서와 장기여신의 제공으로 미국 수출업계가 해당 부문에서 비로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.

[안 응 호]

◆ 미수은, 케이프타운 협약²⁾ 비준국들에게 제공하는 위험수수료 할인 연장

미수은은 최근 상업용 대형항공기 구매관련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절차를 마친 서명국

에 대하여 미수은 지원금융을 사용하는 경우, 여신지원조건 중 대외위험수수료(exposure

1) OECD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통상 일반 상업금융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회수하지 못 하는 경우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. 일반적으로 투자의 회임기간이 긴 사업은 상업성이 없음.

2) 케이프타운 협약은 2001년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합의된, 항공기 및 관련 엔진구매를 위